

# 화성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제안자 : 2022. 11. 11. 전성균 의원 등 6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22. 11. 14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교육복지위원회(2022. 11. 25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전성균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화성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함.

### 나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.

나.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.

다.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
라.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(안 제4조, 제5조).

마.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추진과 위기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(안 제6조~제8조).

바.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 등을 위한 예산지원을 규정함(안 제9조)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황당연)

- 본 조례안은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조례로써 구체화하는 사항으로, 주요 골자는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, 협의체 운영 규정, 위기대응 협력체계 구축, 응급입원자를 위한 공공병상 확보 등과 관련된 예산지원 사항임.

- 검토결과, 본 조례를 통하여 정신질환자들과 시민들에게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급상황을 최소화하고, 환자 인계 등 유기적인 연계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,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장기적 사업체계 구축으로 포용적 사회구성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,
- 협의체 구성에 있어 정신건강 관련시설 종사자 뿐만 아니라 정신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의학 자격요건을 갖춘 의료인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 긴급 정신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가 안정적으로 적시에 치료·보호 받을 수 있도록 현장지원팀이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제안자 : 2022. 11. 11. 전성균 의원 등 3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22. 11. 14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교육복지위원회(2022. 11. 25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전성균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관련 조례와 용어를 통일하고 교과 과정 중 체육 과목 이수에 필수적인 체육복을 무상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.

### 나. 주요내용

- 교복의 정의를 개정함(안 제2조제3호)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황당연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급조례인 「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복의 정의와 용어를 일치시킴으로서, 중고생들에게 교복과 생활복 이외에도 체육복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,
- 검토결과, 본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학생을 둔 가정 또는 보호자 등에 대한 교육 재정부담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,
- 우리 시에 거주하면서 타지역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 5. 토론요지 : 생략

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 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##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제안자 : 2022. 11. 11. 이해남 의원 등 6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22. 11. 14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교육복지위원회(2022. 11. 25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이해남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헌법 제34조제3항은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, 동조 제4항에서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천명하고 있음.
- 본 조례안은 관내 여성청소년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생리용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성시가 주체가 되어 여성청소년에 대한 헌법상의 중첩적 보호 의무를 실현하려는데 제정의 취지가 있음.

### 나. 주요내용

가. 생리용품 지원 계획의 수립 (안 제3조)

나. 생리용품 지원 방법 (안 제4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황당연)

- 본 조례안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리용품 지원을 조례로써 구체화하는 사항으로, 주요 골자는 관내 만11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여성들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,
- 검토결과, 본 조례를 통하여 여성청소년들에게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여 재정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여성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나,
- 사업시행 전에 지급시기 및 지급기준일과 지급중지 사유 발생시 환수 조치 등 지급기준에 대해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 5. 토론요지 : 생략

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 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##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제안자 : 2022. 11. 11. 이해남 의원 등 2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22. 11. 14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교육복지위원회(2022. 11. 25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이해남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화성시 평생학습관 사용 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5항제4호 중 ‘종교 및 정치 집회’는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바,
- 이를 나누어 전자는 ‘종교의식 또는 선교 등을’로 하여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 후자는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행위에 대한 예외를 두어 시민들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데 개정의 취지가 있음.

### 나. 주요내용

- 평생학습관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16조제5항제4호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황당연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의 ‘종교 및 정치 집회’를 목적으로 하는 평생학습관 시설사용을 제한하던 사항을, ‘종교의식 또는 선교’와 ‘정치적인 행위’로 분할 및 수정하여 제한의 범위를 명확화하는 사항으로,
- 검토결과,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‘정치 집회’라는 모호한 표현을 수정하여 다양한 상황에 따른 자의적 또는 포괄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축소하고, 「공직선거법」 등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의 시설사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 5. 토론요지 : 생략

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 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##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제안자 : 2022. 11. 11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2. 11. 14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교육복지위원회(2022. 11. 25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아동보육과장 신용선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아동복지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을 단순히 재기재한 기존 조문을 일제 정비하고,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가. 안 제1조(목적): 개정

- 위임 근거인 「아동복지법」 제12조 외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추가로 명시

나. 안 제2조(설치 및 기능), 제3조(구성 등), 제4조(위원장의 임무)제2항, 제5조(위원의 임기): 삭제

-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것으로 삭제

다. 안 제3조의2(소위원회): 삭제

- 2021. 6. 30. 「아동복지법」 제12조 후단에 사례결정위원회(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 포함)로 개정되어 삭제

라. 안 제6조(위원의 해촉): 삭제

- 위원회 해촉은 「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9조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

마. 안 제7조(회의) 제3항 및 제4항: 삭제

- (제3항)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것으로 삭제
- (제4항)조문 정비가 필요하여 삭제

바. 안 제7조의2(우선조치): 삭제

-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(보호조치) 제6항의 근거하여 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·결정 전 일시보호조치가 되는 사항으로 삭제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황당연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목적, 위원회의 구성 등이 상위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됨에 따라 단순 삭제 또는 개정하는 사항으로,
- 검토결과, 관련 조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화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문제발생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, 중복적인 표현을 삭제하여 더욱 명확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(가칭)다함께돌봄(새솔)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22. 11. 11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2. 11. 14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교육복지위원회(2022. 11. 25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아동보육과장 신용선)

### 가. 제안이유

-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권역별·연차별 「다함께돌봄센터」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.
- 화성시 다함께돌봄센터 새솔센터는 송산그린시티 반도유보라 아파트(화성시 수노을1로 236, 980세대) 입주민들의 설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사항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#### 가. 법적근거

- \* 아동복지법 제44조의2,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,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,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

#### 나. 위탁시설현황

- 1) 위탁시설명: (가칭)다함께돌봄(새솔)센터
- 2) 위 치: 화성시 수노을1로 236
- 3) 시설연면적: 107.5㎡(다함께돌봄 전용면적)

#### 다. 위탁사무

- 1)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
- 2)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운영위원회 운영
- 3) 다함께돌봄센터 아동 상담프로그램 운영
- 4) 지역사회와의 교류 관련 각종 사업
- 5)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 및 아동돌봄 관련하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

라. 위탁계획

- 1) 위탁기간: 2023. 3. ~ 2028. 3. (계약일로부터 5년)
- 2) 수탁자의 자격
  - 사회복지법인
  - 비영리 법인
  -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
- 3) 위탁기준 및 선정방법
  -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수탁자 선정)
  -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
  - 수탁자의 재정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
  - 수탁자와는 위탁내용 및 의무, 예산지원액 등에 관하여 협약서 작성, 교환

※ 위·수탁 조건 위반 및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위탁취소 가능
- 4) 위탁운영원칙
  - 토지 및 건물사용: 무상사용
  - 지원예산: 인건비, 운영비, 프로그램비
- 5) 소요예산액: 171,292천원(2023년 본예산 기준)
  - 시설비(리모델링) 및 자산취득비 70,000천원
  - 인건비 88,692천원(7,391천원 \* 12개월)
  - 운영비 12,600천원(1,050천원 \* 12개월)

마. 조직운영

- 1) 인력기준: 3명 (센터장 1인, 돌봄 교사 1인, 반일제 돌봄 교사 1인)

바. 시설구성: 프로그램실, 사무공간, 탕비실, 상담실, 취사공간

사. 향후 추진계획

- 1) 2023. 1.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사업자 공모
- 2) 2023. 3. 사업위탁 계약 체결 및 리모델링 공사
- 3) 2023. 5. 이용자 모집 및 센터 개소 운영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황당연)

- 본 동의안은 초등돌봄 수요가 높은 새솔동 지역에 신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5년간 민간위탁 시행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,
- 검토결과,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파악하여 아동 돌봄에 대한 지역별 균형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, 돌봄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돌봄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효과 및 만족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 5. 토론요지 : 생략

#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# 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